

## 제7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12. 22.(수)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의 와이브로 사업 - (2010-76-310)**

○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KMI)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허가신청 적격 심사(예비심사)

-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 외국인 지분제한(49% 초과소유) 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② 사업계획서 심사(본심사) :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합하여 진행

- (심사위원 구성) 법률·경제·경영·회계·방송통신 분야 등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및 평가)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주파수 할당심사의 경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신청인 중 고득점자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영업계획의 타당성 5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 주파수 할당심사의 경우 주파수 이용계획 5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 25점

**2)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 - (주)CJ헬로비전의 (주)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 양수 - (2010-76-311)**

○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주)CJ헬로비전의 기간통신사업(국제전화, 인터넷전화) 양수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인가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사업양수 법인 : (주)CJ헬로비전 (대표:변동식)

주요사업 (가입자수)	사업구역	주요 주주(5%이상)	경영현황('09년, 단위:억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 (226.8만명) 초고속인터넷 (55.2만명) 인터넷전화(별정) (31.5만명)	서울 수도권 · 부산 경남권	· (주)씨제이오쇼핑 (53.9%) · 자기주식 (11.5%) · Sable Asia Ltd. (10.6%) · AA Merchant Banking Investments, Ltd. (8.6%) · Formosa Cable Investments, Ltd. (6.3%)	1,536	3,294 (통신 698)	429

② 사업양도 법인 : (주)세종텔레콤 (대표:김형진)

주요사업 (가입자수)	사업구역	주요 주주(5%이상)	경영현황('09년, 단위:억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전용회선설비임대 인터넷전화(6.6만명) 국제전화 등	전국	· (주)세종캐피탈 (96%)	593	967	-24

3)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SK텔링크(주) - (2010-76-31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의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과 SK텔링크(주)의 방송국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 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허가 유효 기간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은 5년, SK텔링크(주)는 3년으로 함

② 허가조건

사업자명(대표자)	조건 내용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이몽룡)	○ 시청자 불만 해결 등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2011년 2월까지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할 것 ○ 방송 품질 향상과 시청환경 개선을 위한 위성 중계기 효율화 방안을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할 것
SK텔링크(주) (이규빈)	○ TU미디어(주)와의 합병 시 부과된 조건 이행과,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수할 것 ○ 방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할 것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주)강원민방 - (2010-76-313)**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의거, (주)강원민방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주)강원민방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67차 위원회(10. 11. 18)에서 재허가를 보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청문을 실시(10. 12. 7)

○ 주요 내용

① 허가 유효 기간 : 3년

② 허가 조건

- 최초 지상파DMB사업 허가 시 사업계획서 상의 미 구축한 중계망(2011~2012년)과 청문 시 제출한 구축계획(2013년 6월)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기한은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2011년 12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2013년 6월까지	합 계
1~2kW	2개국	1개국		3개국
100W이하			2개국	2개국

- 위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2013년 12월까지의 방송보조국 추가 구축 계획을 재허가 이후 2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2013년까지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하나방송(주) 재허가에 관한 건 - (2010-76-314)**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허가 유효기간이 2011년 2월 11일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하나방송(주)의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허가 유효 기간 : 3년

② 허가 조건

-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매 분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분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하나방송(주)의 이행각서, 최대액출자자인 (주)커뮤니스와 그 최대주주의 이행각서에서 명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하나방송(주)의 이행각서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계획대로 이행
- 지역센터 통합 운영
-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확대,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 최대액출자자인 (주)커뮤니스와 그 최대주주의 이행각서 주요내용

- 하나방송(주)이 영업부진으로 영업이익 감소시 증자 20억원 및 신규차입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계획 이행
- (주)커뮤니스는 '10. 7월 취득한 주식 40만주(18.7%)를 3년간 매각하지 않음

**6) (주)경기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 (2010-76-315)**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최다수 주식보유자를 변경하고, 소유지분 관련 방송법 위반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변경허가('04년)와 재허가('07년)를 받은 (주)경기방송에 대해 원안대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주)경기방송의 재허가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피심인 2인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함.

※ 「방송법」 제8조제2항(1인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주)경기방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피심인이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보류하기로 함.

**7)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0-76-316)**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신청('10. 9월)에 따라 마련된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변경허가 신청 사업자 : 창원문화방송(주), 진주문화방송(주)

< 방송국 보유 현황 >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TV	DTV	소계	AM	표준FM	FM	소계	
창원문화방송(주)	1	1	2	1	1	1	3	5
진주문화방송(주)	1	1	2	1	1	1	3	5

② 심사 기본방향

-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해당지역 시청자,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청취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의견 수렴
- 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법인합병 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인 점을 중요하게 고려

③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배 점 (총1천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00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
5. 재정능력	150
6. 기술적 능력	100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50

④ 허가여부 결정 기준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변경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변경허가’ 의결

⑤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

구 분	구 성 (안)	중점심사분야
위 원 장	방송통신위원	심사총괄
심사위원	방송 분야 2인	방송의 공적책임,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법률전문가 1인	법적 타당성
	경영·회계 분야 2인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기술 분야 1인	기술적 능력
	시청자 분야 1인	방송의 공적책임,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간사

**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엠에스하모니 등 35개 사업자**  
- (2010-76-317~351)

○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주)엠에스하모니 등 35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위반내용

① 과태료와 시정명령 병과 대상 사업자(19개 사업자) 위반내용

-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음 : (주)엠에스하모니, (주)골프스카이, (주)레이싱조이, (주)티온네트워크 등 15개 사업자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음 : (주)리빙티브이 등 2개 사업자
-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위탁 : 2개 사업자

② 시정명령 대상 사업자(15개 사업자) 위반내용

- 내부관리계획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없음 : 4개 사업자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2개 사업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 (주)지지옥션, (주)한국법원경매정보
- 회원탈퇴 방법을 어렵게 함 : 1개 사업자
- 개인정보 양도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 1인
- 개인정보 DB 접근권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비밀번호 생성방법 및 변경주기 설정·운영 미비 : 1개 사업자
- 내부관리계획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없으며, 주민번호 암호화 저장 및 보안서버를 구축 하지 않음 : 1개 사업자
- 내부관리계획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없으며, 비밀번호, 주민번호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음 : 1개 사업자
- 이용자로부터 동의받는 방법이 부적절하며, 보안서버 등을 구축하지 않음 : (주)동원스포츠
- 내부관리계획이 형식적이며, 인증없이 외부에서 개인정보 DB접속 허용 : 1개 사업자
-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내용이 부적절함 : 1개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 위반사업자의 명단만 공개함.

② 처분내용

① 과태료 부과

- 19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3백만원부터 8백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② 시정명령

- 35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부과

9)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0-76-352)

-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별표5-2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적 규정 위반시 산정기준

위반 유형	부과 과징금
영업보고서 미제출	제출지연일 등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장부(자료) 미비치	1억원 이하
검증관련 명령불이행	불이행 유형에 따라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② 영업보고서 허위기재 등 실체적 규정 위반시 산정기준

<b>기준금액</b>	▪ 기준금액 = 회계장부상 오류발생금액 × 부과기준율(0.5% ~ 0.25%)
<b>필수적가중</b>	▪ 회계자료의 위·변조, 고의적 은폐 조작에 대한 가중률 적용
<b>추가적 가중·감경</b>	▪ 위반행위 증감, 위반행위 반복여부에 따라 추가적 가중·감경 ▪ 자진 시정, 자체교육, 회계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노력시 경감 등

③ 추가적 감경사유

- 방통위 자체 행정규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단순실수에 의한 위반의 경우에 대한 감경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



사. 보고사항

1)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 '10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시상 목적

-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건전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

② 시상 분야

시상분야	시상 부문	시상 취지	
프로그램 분야	大賞	○2010년도에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우수상	창의발전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공헌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사회·문화	○사회 통합, 국민 사기진작 및 문화 발전 등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지역발전	○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문화, 지역경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뉴미디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등의 프로그램 중에서 매체의 특성을 잘 살려 제작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시청자제작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시청자 주권 향상에 공헌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라디오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공익적 소재를 통해 방송문화 발전에 공헌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특별상 분야	공로상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선정·시상	
	바른 방송언어상	○바른 우리말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방송기술상	○방송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③ 시상부문 및 부문별 시상금

시상 분야	시상 부문		시상규모	시상금	훈격
프로그램 분야	大賞		1점	2천만원	대통령
	우수상	창의 발전	2점	각 5백만원	방통위원장
		사회·문화	2점	각 5백만원	
		지역발전	2점	각 5백만원	
		뉴미디어	2점	각 5백만원	
		시청자제작	2점	각 5백만원	
		라디오	2점	각 5백만원	
소 계		13점	8천만원		
특별상 분야	공로상		1점	1천만원	방통위원장
	*바른 방송언어상		1점	5백만원	방통 심의위원장
	*방송기술상		1점	5백만원	한국전파 진흥원장
	소 계		3점	2천만원	
시상금 합계				1억원	

\* 바른 언어문화의 확산과 방송제작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바른 방송언어상'과 '방송 기술상'을 신설하고 시상금(각 5백만원)은 해당 직무기관이 지급

④ 심사방안

- 외부전문가로 예심·본심 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단계별 심사를 거쳐 대상·우수상·특별상 수상대상을 결정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12. 24(금),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5)